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32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조정훈·박충권·김용태

김대식・정성국・조경태

김예지 · 최수진 · 이철규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함부로 뿌리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처벌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지광고물의 표시 · 배포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의2제2항제8호 신설).
- 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표시·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조의3).
- 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제작·표시 ·배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항제1 호의2).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으로 한 다.

제5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 중 "표시한"을 "표시·배포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의2 중 "표시한"을 "표시·배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 <u>하</u>	<u></u> <u></u>		
<u>여서는</u> 아니 된다.	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 광		
	고물을 배포하여서는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	2		
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			
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 ③ ~ ⑥ (생 략)
-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 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 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 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u>·표</u> 시한 자
 - 1의3. (생략)
 - 2. ~ 5. (생략)
 - ② · ③ (생략)

8.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벌칙)
<u>표시·배포한</u>
제20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u>• 배포한 자</u>
1의3.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